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9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민병덕 · 안도걸 · 최민희
서미화 · 이광희 · 권향엽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

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지원”을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8(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해당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 ③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3. 기반시설 개량 비용
 4.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u>지원</u>) ① <u>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u>부담</u>) <u>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 <u><삭 제></u> 제38조의8(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u>

할 수 있다.

②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해당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

	<u>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u> <u>2.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u> <u>3. 기반시설 개량 비용</u> <u>4.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u> <u>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u>
--	--